

## 4. 일부다처

### 1. 多妻가 존재한 사회

- 국왕의 혼인

- 국왕의 혼인에 나타나는 多妻 양상을 살펴본다.

- 富家の 혼인

- 富家の 多妻 현상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다.

○ 또 富家は 妻를 娶함에 3~4인에 이르고 조금만 서로 맞지 않아도 문득 헤어지고 버린다[離去]. (고려도경 권 22, 雜俗 1)

- 崔忠獻의 多妻 사례

- 최충헌의 多妻 사례를 살펴본다.

○ 고종 원년에 (崔)忠獻의 妻 任氏를 綏成宅主에 봉하고 王氏를 靜和宅主에 봉했다. 任氏는 본래 將軍 孫洪胤의 妻였다. 崔忠獻이 洪胤을 죽이고 그 아름다움을 듣고 私通하였다[私之]. 王氏는 康宗의 庶女이다. (중략) 忠獻이 처음에 上將軍 宋淸의 딸을 娶하여 怡와 珣을 낳았고, 任氏는 玦을 낳고, 王氏는 球를 낳았다. (高麗史 권129, 열전 42, 반역 3, 崔忠獻)

- 전쟁 상황의 多妻 사례

- 전쟁 같은 비상 시기의 多妻 사례를 살펴본다.

○ 羅裕는 나주인이다. (중략) 여러 번 옮겨 將軍이 되었다. 元帥 金方慶을 따라 진도에서 삼별초를 토벌하여 공을 세웠다. 당시에 朝士들의 妻가 많이 敵率에 빠지자 改娶하였다. 적이 평정되자 妻 중에 흑이 돌아왔으나 모두 버렸다.[弃之] 裕도 이미 새 妻를 娶했으나 먼저 적중에 들어가 舊室을 얻어 다시 처음처럼 부부가 되니 듣는 사람이 의롭게 여겼다. (高麗史 권104, 권17, 羅裕)

○ 원종 13년 5월에 御史臺가 아뢰기를 “庚午년(원종 11, 1270)의 變으로 朝官들이 그 家屬이 賊率에 빠지자 많이 改娶하였습니다. 지금 賊이 평정되어 그 舊室이 비록 돌아온 자가 있어도 혹 더럽힌 바가 있는가 의심하고 혹 新婚을 기뻐하여 버리고[弃] 돌아보지 않아 人倫이 무너지고 많이 원망하게 되니 청컨대 금지시키십시오.” 하니 따랐다. 父母의 和論이 없거나 연고 없이 처를 버리는[弃] 자는 停職하고 付處하게 하였다. (高麗史 권84, 刑法志 1, 戶婚)

#### - 권력자의 多妻 사례

- 고려 후기 권력가의 多妻 사례를 살펴본다.

○ 康允忠은 본래 賤隸인데 처음에 충숙왕을 섬겨 護軍이 되었다 (중략) 궁중에 출입하며 사랑을 받아 정권을 잡고 위복을 누렸다 (중략) 金倫, 李齊賢, 朴忠佐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중략) 현재 三妻가 있는데 또 故密直 趙石堅의 服喪 중에 있는 妻를娶하여 石堅의 家産을 움켜 차지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高麗史 권124, 열전 37, 폐행 2, 康允忠)

○ 潘福海는 巨濟 사람이다. 辛禰의 嬖幸이 되었다. (중략) 후에 福海는 密直副使로 승진했다. 禰가 西海道로 사냥을 갔는데 福海가 따라 가서 瓮津에 도착했다. 禰가 돼지를 쏘자 돼지가 돌진하여 말을 들이 받으니 禰가 놀라 떨어졌다. 福海가 말을 달려 곧장 앞으로 가서 화살 하나로 죽여 禰가 면함을 얻었다. 이로부터 寵遇가 날로 융성하여 왕씨를 賜姓하고 아들로 삼았다. 발탁하여 門下贊成事로 삼았다. (중략) 福海는 林堅味の 딸을娶하고 후에 또 전의주부 柳芬의 딸을娶하였으나 견미가 감히 금하지 못하고 다만 울며 탄식할 따름이었다. (高麗史 권124, 열전 37, 폐행 2, 潘福海)

#### - 多妻 양상과 법제

- 多妻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에 대해 검토한다.

○ 前朝의 말에 사대부들이 2~3妻를 竝畜했는데 國家의 定制는 아니었다. 이는 기강이 해이하고 풍속이 훼손되고 무너지 그런 것이다. (別洞先生集 권2, 疏, 陳言, 離澹嫡妾分揀陳言)

○ 무릇 부인은 반드시 室女로 남의 正妻가 된 자라야 封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이 없고 嫡母도 자식이 없지만 次妻의 아들이 관직을 가진 경우에는 嫡母를

봉하도록 하십시오. 次妻는 비록 남편으로 인해 봉해질 수는 없다고 해도 소생한 아들이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어머니가 아들로서 귀하게 되는 예에 따라 縣君에 봉하도록 하십시오 하니 따랐다. (고려사 권75, 선거지 3, 銓注, 封贈)

- 솔서혼과 多妻의 성격

- 多妻의 성격을 솔서혼의 존재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 司諫院이 治道 數條를 올렸다. (중략) 一, 永樂 12년 7월일의 司憲府의 啓本 내용에, 前朝의 말에 大小의 員人으로 京外에 兩妻를 竝畜하는 자가 있었고, 다시 娶했다가 도로 先妻와 합한 자도 있었으며, 먼저 妾을 娶하고 뒤에 妻를 娶한 자도 있고, 먼저 妻를 娶하고 뒤에 妾을 취한 자도 있었습니다. 또 일시에 三妻를 竝畜한 자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서로 嫡을 다투어 爭訟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妻가 있는데 妻를 娶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략) (태종 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